

#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접근



2022. 11. 30.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



## I

### 중대재해처벌법과 컴플라이언스

1. 컴플라이언스의 의미
2.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3. 중처법을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
4. 건설업 내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 II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산재사망자 현황
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3.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4. CEO 형사면책(감경) 방안
5. 수사대응
6. 중처법 상 컴플라이언스 확장 이행방안



## III

### 최신 동향

1. 중대재해 발생 동향
2. 법 개정 동향



# I

## 중대재해처벌법과 컴플라이언스

1. 컴플라이언스의 의미
2.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3. 중처법을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
4. 건설업 내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 II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산재사망자 현황
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3.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4. CEO 형사면책(감경) 방안
5. 수사대응
6. 중처법 상 컴플라이언스 확장 이행방안



# III

## 최신 동향

1. 중대재해 발생 동향
2. 법 개정 동향

# 01 컴플라이언스의 의미

## 사전적 의미

- Compliance: 누군가의 희망이나 요구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
- follow, obey와 비슷하나 순종과 굴복(yield)의 의미가 조금 강함

## 기업경영에서의 의미

- 기업의 업무수행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제반 규정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련의 자발적인 사전점검 행위
- 소극적으로 임직원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위반에 대하여 조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전적인 교육, 연수, 상담 등을 통해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것에 중점

## 유사 개념과의 비교

- 컴플라이언스는 감사(audit, inspection)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감사는 징계를 하기 위해 적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컴플라이언스는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전점검의 차원에서 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법률 리스크

- 법률 리스크란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규나 규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손실 위험을 의미
- 기업의 경영 방식은 과거 주주 위주의 경영에서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화
- 기업의 주요 법률 리스크는 유통업체·협력업체 관련 리스크, 경쟁업체 관련 리스크, 정부·투자자 관련 리스크, 고객 관련 리스크, 임직원 관련 리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잡해지고 있음



선제적  
관리를  
통한  
법률  
리스크  
사전  
차단



####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선제적 대응

-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는 무엇보다도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점차 강화되는 다양한 법적 규제에 직면하면서 여러 법률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노출
- 기업이 법이나 규제를 위반하면 형사적, 행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분쟁, 재무적 손해, 기업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큰 손실이 발생

### 03 중처법을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

#### 중처법 위반 시 ESG 공급망에서 제외 가능성

- EU가 2022. 2. 공급망 실사 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독일이 2023. 1.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함에 따라 협력사의 ESG 경영 준수가 중요
- APPLE 은 2021년 52개국 1,177개 협력사 사업장을 현장 실사하고, 35만 여명의 협력사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
- 삼성전자는 부품부터 제품까지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에코파트너(Eco-Partner) 인증' 심사
- 에코파트너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 제한
- LG전자는 심층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1회 협력회사 자가점검 실시 중
- 중처법 대응은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중 S(사회, Social)에 직결
- 국내 기업들이 중처법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ESG 공급망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됨



삼성전자



## 04 건설업 내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

-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발표
  - 2030년부터는 쉐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ESG 공시 의무 부과
  - 기업지배구조보고서(G)의 경우, 2019년부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2026년부터 쉐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유럽은 2021. 3.부터 ESG 공시 의무대상을 연기금에서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로 확대
- 영국은 2025년부터 모든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 건설사의 자금조달과 직결

- 기업의 ESG 경영은 투자판단의 핵심지표로 부상하였으며, 국내외 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등급 평가에 ESG를 참고
  - ESG 평가 등급이 낮은 건설사의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외면
- 해외 국부펀드의 경우, 국내 OO건설이 석탄사업을 지속한다는 이유로 '관찰기업'으로 선정
  - 사실상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 초래
- 국내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PF 등 금융거래 시 ESG 요소를 반드시 사전 점검



건설사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 04 건설업 내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 I. 중대재해처벌법과 컴플라이언스

### 건설사는 안전보건 이슈로 인하여 ESG 등급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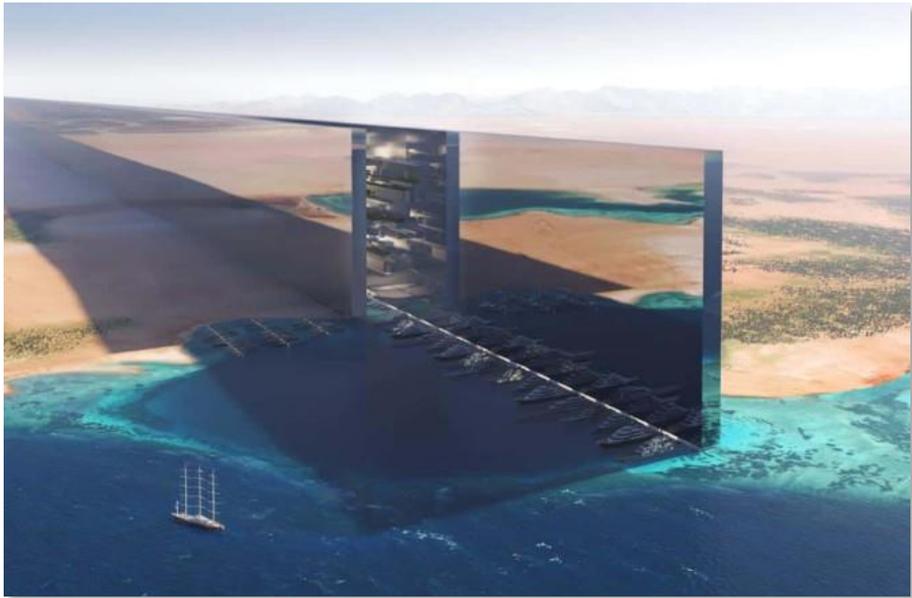
- 고용노동부가 2022. 10. 4.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 1. ~ 6.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사망자수가 가장 많음
  - 발생건수: 건설업(48.4%), 제조업(29.9%), 기타 사업(11.4%) 등
  - 사망자수: 건설업(48.3%), 제조업(30.5%), 기타 사업(11.4%) 등
- 전체 사망자 대비 건설업 사망자의 비중은 2016년부터 계속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 건설업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해 건설사의 ESG등급은 전체 상장사 대비 낮은 수준
  - 기업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ESG 중 S에 직결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의하면, 2021년 상장 건설사 중 ESG 등급 A를 획득한 건설사는 13.0%, B+과 B는 17.4%, C는 52.2%
  - 전체 상장사 중 C를 받은 회사가 28.9%임을 감안하면 상장 건설사의 ESG 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
- 건설사가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을 통제하는 경우 높은 ESG 등급을 획득하게 되며, 이는 원활한 자금조달과 사업실적 개선에 기여

### 2022년 3분기 상위 20대 건설사 사망사고 현황

원청	하청	사망자수	사고일자
DL이앤씨	안송건설	2	8. 5.
대우건설	라인공영	1	7. 12.
	에코프랜	1	8. 25.
현대엔지니어링	승주건설	1	7. 12.
디엘건설	안송건설	1	9. 26.
금호건설	장원기전	1	8. 8.
코오롱글로벌	한영건설	1	8. 4.
계룡건설산업	신정에스앤더블유	1	7. 4.
	토방씨앤에스	1	9. 3.

(출처: 국토교통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시장의 ESG 강조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 4. 25.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Saudi Vision 2030" 전략을 발표하였음
- 최근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으로 인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Saudi Vision 2030" 전략에 따른 14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임
- "Saudi Vision 2030" 전략에서 ESG는 핵심요소에 해당함
- 사우디 주식거래소는 2021. 10. "Saudi Vision 2030" 전략 실행을 위해 상장사에 대한 ESG 공시 지침을 발표
  - 위 지침에는 Social 부분에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평가"가 명시되어 있음
- 사우디 국부펀드(Public Investment Fund)는 글로벌 ESG 투자에 4천억 불을 투자할 것을 약속
-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시장에서 ESG가 중요해짐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및 기업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참여 기업의 ESG 경영 여부를 평가할 가능성이 높음



# I

## 중대재해처벌법과 컴플라이언스

1. 컴플라이언스의 의미
2.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3. 중처법을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
4. 건설업 내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 II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산재사망자 현황
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3.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4. CEO 형사면책(감경) 방안
5. 수사대응
6. 중처법 상 컴플라이언스 확장 이행방안



# III

## 최신 동향

1. 중대재해 발생 동향
2. 법 개정 동향



### 2021년도 산재사망자 828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고사망자수 (명)	969	964	971	855	882	828
* 제조업 (명)	232	209	217	206	201	184
* 건설업 (명)	499	506	485	428	458	417
* 서비스업 (명)	127	144	154	118	122	123
* 기타 (명)	111	105	115	103	101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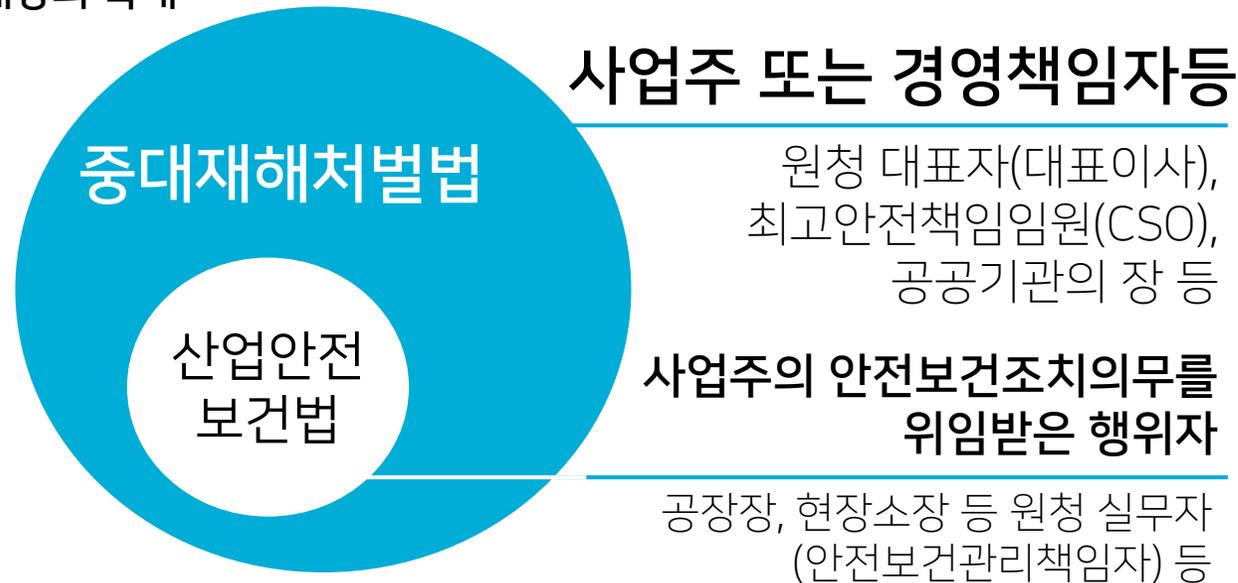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행위자, 사업주(법인+개인)	개인사업주, <b>경영책임자 등</b>
보호 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b>종사자, 제3의 종사자(고용관계 기속X)</b>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장소		사업 또는 사업장 도급인의 사업장	<b>실질적 지배·운영·관리</b> 사업 또는 사업장 (시설, 장비, 장소)
의무 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안전 및 보건 <b>확보</b> 의무
형사 처벌	처벌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부상,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사망] 10억 원 이하 벌금	[사망]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 질병] 10억 원 이하 벌금
징벌적 배상제도		없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

# 03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1. 의의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

➤ 처벌대상의 확대



## 03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2. 입법 배경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하다는 비판적 견해가 많았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 사고, 구의역 김 군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증가

[시사저널] '위험의 외주화' 故 김용균 2주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라 "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위험의 외주화 극복" VS "처벌 강화 능사 아냐"

[뉴스큐] 평택항 20대 청년의 죽음...외주화가 부른 또다른 참사

## 03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규정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예방법(의무주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발생 처벌법(피의자·피고인)>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03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3. 중대재해의 종류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서 다음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③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03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4. 정의

#### ➤ 경영책임자등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일반 사기업에 관한 규정인 ‘가목’에서는 대표이사 외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03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 직종과 무관하게 다수 사업에 노무 제공자 ○
- ✓ 호기심이나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X
- ✓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 X
- ✓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각 단계별 수급인 및 종사자 ○

## 03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 중대시민재해

- ✓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법 제2조 제3호)
  - ▶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 외의 시설, 차량, 물체, 공작물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는 재해 원인과 재해 규모가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님
  - ▶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란, 시설, 설비, 부품, 자재 등 그 자체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고 원인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2021. 11.]

- ▶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
- ▶ 시설, 장비,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중대산업재해 발생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03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5. 형사처벌 규정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법인 또는 기관
형사처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전보건교육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총 20시간 범위에서 이수명령 - 미이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대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 03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II.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사전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대통령령위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 산업 재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	
중대 시민 재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사후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3. 유해위험 요인 관리

4. 제3자의 안전보건 관리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4.1)</li> <li>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4.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계획 수립 (§ 10.4) - 매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 관련 인력 배치 (§4.5,6)</li> <li>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4.4) - 매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 관련 인력 배치 (§8.1)</li> <li>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8.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 관련 인력 배치 (§10.1) - 매년</li> <li>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10.2) - 매년</li> <li>안전점검 수행 여부 확인 (§10.3) - 매년</li> </ul>
2.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 여부 확인·점검 (§8.5) - 반기 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 여부 확인·점검 (§10.5) - 반기 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시 대응절차 마련 및 확인·점검 (§4.8)</li> <li>종사자 의견 청취 (§4.7) - 반기 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처리절차 마련 (§ 8.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처리절차 마련 (§ 10.7)</li> </ul>
3. 유해위험 요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조치 (위험성 평가) (§4.3) - 반기 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조치 (위험성 평가) (§8.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조치 (§10.7가,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점검 및 필요조치 이행 (§5.②.1,2) - 반기 1회</li> <li>안전보건교육 실시 (§5.②.3,4) - 반기 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점검 및 필요조치 이행 (§9.②.1,2) - 반기 1회</li> <li>안전보건교육 실시 (§9.②.3,4) - 반기 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점검 및 필요조치 이행 (§11.②.1,2) - 연 1회</li> <li>안전보건교육 실시, 이행점검 및 필요한 조치 (§11.②.3,4) - 연 1회</li> </ul>
4. 제3자의 안전보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업체 관리 (§4.9) - 반기 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업체 관리 (§10.8)</li> </ul>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현장 실무자의 기술적 접근 강조

# 04 CEO 형사면책(감경) 방안 - 인과관계 단절



## 1 CEO 면책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제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음 (고용노동부, 2022. 1.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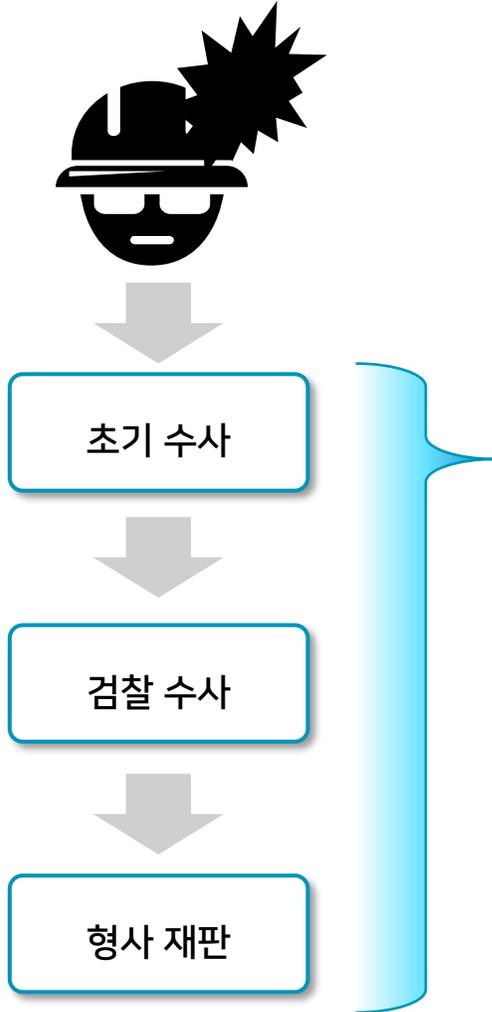
## 2 의무위반과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경우

- 근로자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주차장 천장의 전등 교체 작업 중 감전되어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사인은 '감전'인 점을 이유로 추락방지조치 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부정(의정부지법 2010노2384 판결)

**CEO의 형사면책(감경)을 위한 최선의 방안**

도급인, 수급인으로서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여 부작위와 중대재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진행 절차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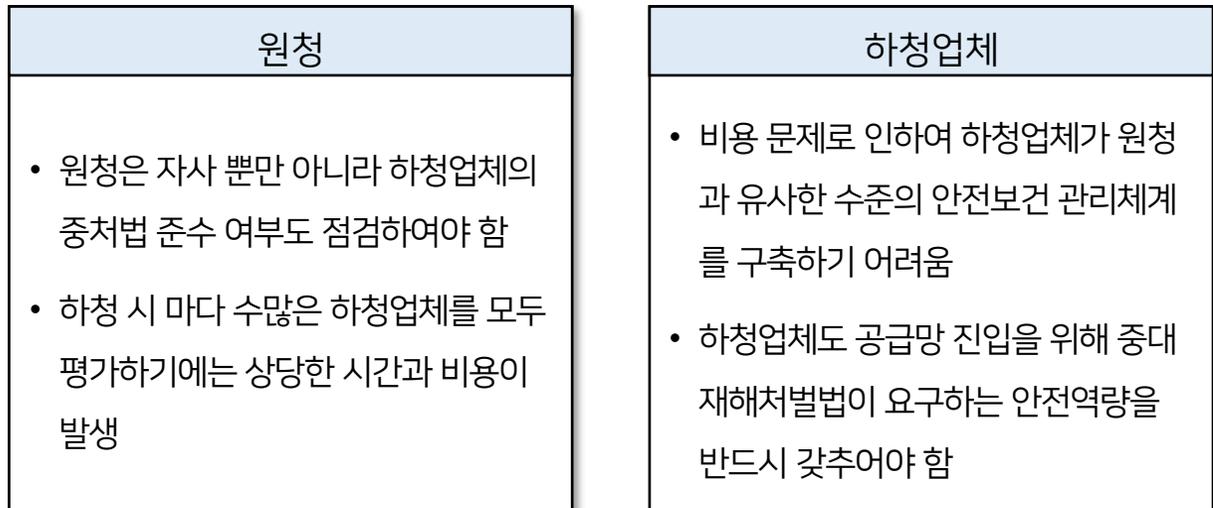


- ✓ 수사 주체 :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고용노동부가(업무상 과실치사는 경찰), 중대시민재해 사건은 경찰이 담당하므로 **동시 대응 필요**
  -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권을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 2. 18. 시행
- ✓ 조사대상 :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모든 관련자 전반**에 대한 조사 진행 예상
- ✓ 조사내용 : 사고발생 경위 /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구성원들의 인식 및 이행 실태**
  -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관련된 자료 준비 및 관리가 필수
- ✓ 압수·수색·구속 영장 / 피의자신문 / 참고인조사 등에 대한 **초동 대응** 반드시 필요
- ✓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

# 06 중처법 상 컴플라이언스 확장 이행방안

## 중처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필요

##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개요



### 명칭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 SCC(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 ※ SAPA=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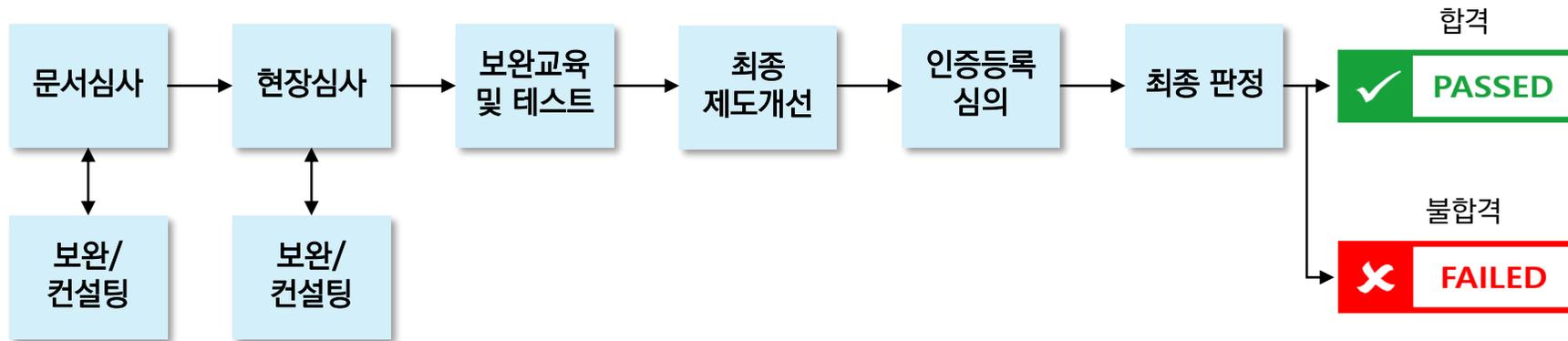
### 인증방식

- Pass/Fail제
  - 총점기준 및 필수항목에 대한 과락기준을 모두 통과하여야 합격(Pass)

### 기타

- 평가와 컨설팅(교육)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

### Pass/Fail제 운영 방안



구분		내용
합격기준 (1.항 및 2.항 모두 충족하여야 합격)	1. 총점 기준	•총점이 일정 점수를 통과할 것
	2. 과락 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항목의 경우, 일정 점수 이하의 경우 불합격(Fail) •총점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과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Fail)

### 평가항목

중대 산업재해	경영자리더십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수립, 안전보건 담당조직 구성 등
	종사자참여	안전보건정보 공개 및 게시, 종사자 의견청취 및 이행점검 등
	유해위험요인 관리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
	재해대응체계 구축	비상시 대응절차 구축, 재해 발생 후 대응절차 구축 등
	도급·용역·위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등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점검, 안전보건교육 이행점검 등
중대 시민재해 (원료·제조 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인력배치,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등
	재발방지 대책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등
	개선·시정명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시정 이행 등

### 체크리스트 예시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기준	배점	평점
1	중대산업재해	경영자리더십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회사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방침 수립	10	
2				방침 내용에 모든 종사자(도급·용역·위탁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종사자 참여 활성화, 관련된 법규 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 포함되고,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정보의 양방향 소통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15	
3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에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하였는지 여부(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등)	5	
4				방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	10	

### 인증 절차



- 대륙아주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에 관한 계약 체결
- 인증절차 개시
- 회사가 제공한 문서 검토 후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 권고 및 컨설팅 제공
- 대륙아주가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상황 점검
-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 권고 및 컨설팅 제공
- 미비점 발견 시 보완교육 이수 및 테스트 실시
- 인증심의위원회가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인증등록여부를 결정
- 최종 판정(합격/불합격)



# I

## 중대재해처벌법과 컴플라이언스

1. 컴플라이언스의 의미
2.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3. 중처법을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
4. 건설업 내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 II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산재사망자 현황
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3.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4. CEO 형사면책(감경) 방안
5. 수사대응
6. 중처법 상 컴플라이언스 확장 이행방안



# III

## 최신 동향

1. 중대재해 발생 동향
2. 법 개정 동향

# 01 중대재해 발생 동향

## 가. 법 시행 후 중대산업재해 현황

### 1. 27. ~ 6.23. 산업재해 사망사고건 수와 사망자 수

사망사고건 수(건)		사망자 수(명)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326	289(37▼)	331	306(25▼)

- ▶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전년도 같은 기간의 수치와 비교하였을 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사망사고 11.3% 감소, 사망자수 7.6% 감소)

# 01 중대재해 발생 동향

## 나.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황(1/2)

### 1. 27. ~ 6.23.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사고건 수와 사망자 수

구분		사망사고 건수(건, %)				사고사망자 수(명, %)			
업종	규모	'21년	21. 6. 23.	22. 6. 23.	증감(율)	'21년	21. 6. 23.	22. 6. 23.	증감(율)
전체업종	전체	653	326	289	△37(11.3)	671	331	306	△25(7.6)
	50인(억) 이상	230	124	101	△23(18.5)	244	127	115	△12(9.4)
건설업	전체	346	176	139	△37(21.0)	352	176	147	△29(16.5)
	50억 이상	110	61	43	△18(29.5)	115	61	49	△12(19.7)
제조업	전체	167	83	92	+9(10.8)	177	87	99	+12(13.8)
	50인 이상	74	40	42	+2(5.0)	82	42	49	+7(16.7)
기타업종	전체	140	67	58	△9(13.4)	142	68	60	△8(11.8)
	50인 이상	46	23	16	△7(30.4)	47	24	17	△7(29.2)

▶ 22년 전체 사망사고 총 289건 중 건설업에서 139건, 제조업에서 92건 발생하였는데 건설업은 37건(21.0%) 감소한 반면, 제조업에서는 9건(10.8%)이 증가하였습니다.

# 01 중대재해 발생 동향

## 나.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황(2/2)

### 1. 27. ~ 6.23. 사고유형별 산업재해 사망사고건 수와 사망자 수

사고유형	사망사고 건수(건, %)				사고사망자 수(명, %)			
	'21년	21. 6. 23.	22. 6. 23.	증감(율)	'21년	21. 6. 23.	22. 6. 23.	증감(율)
전체								
떨어짐	303	150	116	△37(22.7)	305	150	120	△30(20.0)
끼임	99	59	56	△3(5.1)	99	59	56	△3(5.1)
부딪힘	49	24	19	△5(20.8)	49	24	19	△5(20.8)
깔림·뒤집힘	48	21	25	+4(19.0)	51	22	25	+3(13.6)
물체에 맞음	47	21	31	+10(47.6)	47	21	31	+10(47.6)
기타(붕괴, 화재, 질식 등)	107	51	42	△9(17.6)	120	55	55	0(0.0)

▶ 22년 전체 사망사고 총 289건 중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추락(116건), 끼임(56건)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매우 위험한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아니라 비교적 낮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작은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대다수입니다.

▶ 특히, 가장 쉽게 발생하는 사고는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운전 중인 지게차에 부딪히거나, 작동하고 있는 설비를 청소하거나 잠시 들여다보다가 끼이는 사고입니다. 예견되는 사소한 위험이 제거되지 않아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로 사전에 간단한 안전조치를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 01 중대재해 발생 동향

### 다.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

- ▶('22. 4. 15.) ○○산업, 천장 누수 여부 확인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추락(1.1m) 사망
- ▶('22. 6. 2.) ○○마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2m) 사망
- ▶('22. 5. 4.) ○○스틸, 근무교대를 위해 이동 중 운행 중인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 ▶('22. 5. 10.) ○○기업, 지게차 운행 중 코너에서 전도되는 지게차에 깔려 사망
- ▶('22. 6. 8.) ○○주물, 작동 중인 조형기 금형 내부 청소작업 중 금형 사이에 끼여 사망
- ▶('22. 6. 11.) ○○목재공업, 설비 유지보수 중 작동 중인 설비에 끼여 사망
- ▶('22. 6. 17.) ○○물산, 컨베이어벨트 하부 청소작업 중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
- ▶('22. 6. 17.) ○○섬유, 실을 감아주는 기계의 회전축에 끼여 사망
- ▶('22. 6. 20.) ○○허브, 상토 혼합 분배기에 흙을 넣다 회전체에 끼여 사망

## 01 중대재해 발생 동향

### 라. 법 시행 후 중대시민재해 현황

#### 중대시민재해 발생 사안 없음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 ✓ 다만 지난 4. 27. 순천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이용객이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경찰은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사건이 첫 중대시민재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01 중대재해 발생 동향

### 마. 시사점

- ✓ 아직까지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건은 없으며, 00산업 1건을 기소하여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건은 1건뿐임. 앞으로 수사 진행 경과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 수사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거나, 압수수색 등이 여러차례 이뤄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경영책임자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음
- ✓ 전체 중대재해 사건 중 24.5% 정도만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경우 압수수색을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음
- ✓ 전체 사망 사고 중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비율이 높으므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충분히 갖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충실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임
- ✓ 다만,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수사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압수·수색, 구속, 기소 건수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01 중대재해 발생 동향

## 라. 시사점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창원지방검찰청</b> 2022. 6. 27.(월)	<b>보 도 자 료</b> 2022. 6. 27.(월)
	<b>제 목</b> <b>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범 최초 기소</b>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0조 제2항)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 2022. 6. 24.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 **필**

- 창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C사 세척제를 납품받아 작업한 창원 A사, 김해 B사 근로자 총 29명이 '22. 2.~3. 연달아 '직업성 질병'(독성 간염) 판정을 받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였음
-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최초로 기소하는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각도로 엄정히 살펴 혐의유무를 판단한 결과,
  -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하고,
  - B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함

- ✓ 검찰(창원지방검찰청)은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함유한 세척제를 사용하여 16명의 종사자가 급성 중독사고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00산업과 13명의 종사자가 같은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00000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처분을 하였음
- ✓ 검찰은 2022. 6. 27. 동일한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두 사업주에 대하여 다른 처분을 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은 00산업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소 처분함
  - 검찰은 00000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 무혐의 처분함
- ✓ 앞으로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02 법 개정 동향

### 가. 법 시행 후 관계기관이 발표한 지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대검찰청 해설서를 제외하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자료가 발표되지는 않았음

#### 고용노동부

시기	내용
1월	개정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 시행
3월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발표
3월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배포
3월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기획감독 실시
4월	긴급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개최
4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매뉴얼 공개
4월	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현장 감독 결과 발표
5월	(주)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특별 감독 결과 발표

#### 검찰

시기	내용
1월	중대재해 수사지원단 출범 및 회의 개최
2월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발표

## 02 법 개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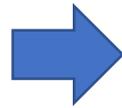
### 나. 새 정부 중대재해 국정 과제

#### 구체적인 내용의 지침이나 매뉴얼 발표 기대

-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구체적으로는 법령을 개정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
  - ▶ 이는 현장의 비판과 경영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 ✓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등은 법령을 개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임
  - ▶ 기존에 발표한 해설서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새 정부 중대재해 국정 과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음(49번 과제).



####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 □ 과제목표

-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 주요내용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
-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 확대
- (건강보호체계 구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확대
-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 지원)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개선
  - 산재 근로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업 복귀 지원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

##### □ 기대효과

-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 감축

감사합니다.